

감리지적 사례 FSS/2008-16 :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미인식

- 쟁점 분야: 매도가능금융자산 손상차손
- 관련 기준: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
- 결정일: 2017년
- 회계결산일: '13.1.1.~'13.12.31.

1. 회사의 회계처리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A사(이하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 상 회사의 회계정책에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기준을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간주한다고 공시하였고, 당기 감사보고서에 공시한 ‘중요한 회계정책’에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판단 기준을 ‘유의적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공시하였다.

회사는 보유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분류한 지분상품에 대해 실무적으로 ‘공정가치가 원가로부터 50%이상 유의적으로 하락하거나 1년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를 손상의 객관적인 증거로 판단하므로, 기말 기준 31.09% 하락한 B 상장주식에 대해 유의적인 하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2. 회계기준 위반 지적 내용

회사는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B)의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여 손상에 해당함에도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3. 지적 근거 및 판단 내용

기업회계기준서 제1039호(금융상품: 인식과 측정) 문단 61에 따르면 지분상품에 대한 손상 판단은 ‘공정가치가 원가 이하로 유의적으로 또는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 손상이 발생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의거 회사가 최초 정한 회계정책은 이후 회계연도에도 일관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만약 회계정책이 변경되었다면 동 기준서에서 정한대로 변경 사유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관련 내용을 적절히 공시하여야 함에도, 회사는 전기 감사보고서에 매도가능지분상품의 손상기준을 ‘30% 이상 하락하거나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경우’로 간주한다고 공시이후 주식 손상 관련 회계변경과 관련된 공시 내역이 없었다.

4. 감사절차 미흡사항

감사기준서 200(독립된 감사인의 전반적인 목적 및 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 등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를 중요하게 왜곡표시되게 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상황이 존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전문가적 의구심을 가지고 감사를 계획하고 수행해야 하며, 감사의견의 근거가 되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입수해야 한다.

동 사례의 경우 외부감사인은 A사가 보유한 B 상장주식의 당기말 기준 시가가 31.09% 하락한 사실을 인지하였고, 금감원 회계제도실의 2012.9월 K-IFRS 질의회신문에 따르면 공정가치의 기말시점 이후 일부 회복은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님에도 기말 이후 주가가 일부 회복($\triangle 31\% \rightarrow \triangle 27\%$)된 점을 근거로 손상차손을 미인식하는 회사의 회계처리를 수용하였다.

또한 감사인은 전기 감사조서 및 감사보고서를 검토하여 회사의 과거 회계정책 및 변경 내용 등을 확인하였어야 함에도 동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였다.

5. 시사점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보유하는 상장주식은 시가가 원가 대비 유의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경우 손상차손을 인식하여야 하고, 시가가 기말시점 이후 일부 회복되었더라도 이는 손상징후 판단 시 고려요소가 아니다.